

#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3.

발의자 : 진선미 · 이원욱 · 김성수

박주민 · 박재호 · 유동수

소병훈 · 김현권 · 김철민

김정우 · 최도자 · 민홍철

금태섭 · 권미혁 · 정성호

손혜원 · 정인화 의원

(1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.

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과적으로 감지대응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공공건축물,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, 이를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감사 결과 주요 공공시설물 중 일부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보수 소홀로 계측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. 이런 계측기 관리 소홀은 지진재난방지 체계에 부실을 가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

게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,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. 또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7조, 제7조의2 및 제29조).

##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기준은”을 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관리비용의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지진 가속도계측기 관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.

법률 제14920호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

에”를 “제1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4항) 및 제4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에”를 각각 “제2항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에”를 “제3항에”로 한다.

1.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2.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
3.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·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4920호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) ①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④ ----- -----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----- -----.</p>
<u>&lt;신 설&gt;</u>	제7조의2(관리비용의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보조 할 수 있다.

법률 제14920호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
제2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. ~ 4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
2.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

법률 제14920호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
제29조(과태료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
2.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 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

3.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·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

4. ~ 7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<삭 제>

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 
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  
손한 자

3.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·지  
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 
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 
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 
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
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시·  
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 
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부  
과·징수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 
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 
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
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 
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 
을 받은자가 제4항에 따라 이  
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  
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  
을 통보하여야 하고, 그 통보를  
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  
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  
을 한다.

② 제1항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

③ 제2항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

④ 제2항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

<p>⑥ <u>제4항에</u>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.</p>	<p>⑤ <u>제3항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